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서천호 · 유상범

김장겸 • 박충권 • 조경태

조지연 • 박덕흠 • 주진우

이종배 · 최형두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라 함)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, 시공자 등(이하 "시공자등"이라 함)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 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6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의26(정비사업조합 설립	제104조의26(정비사업조합 설립
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	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
손금산입) ① 「도시 및 주거	손금산입) ①
환경정비법」 제22조에 따라	
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	
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	
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	
설계자・시공자 또는 정비사업	
전문관리업자(이하 이 조에서	
"시공자등"이라 한다)가 다음	
각 호에 따라 <u>2024년 12월 31</u>	<u>2026년 12월 31</u>
<u>일</u> 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	<u>일</u>
(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"조합등"이라 한다)	
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	
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	
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	
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	
할 수 있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